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상훈
김종양 · 서천호 · 박형수
최보운 · 박충권 · 윤재욱
임이자 · 서일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
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·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
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
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
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하여 이스포츠”를 “위하여 5년마다 이스포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<u>이스포츠</u>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·장기 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·연도별 세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<u>위하여 5년마다 이스포츠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